

英韓工業所有權關聯用語

effectual 圖 法的効力이 있는, 有効한, 適當한, 効果的인

take effectual steps 效果의 措施를 取하다

efficient 圖 效果의인, 有効한, 能率의인, 有能한

efficient patent attorney 有能한 辨理士

effort 圖 努力

I will make every effort to obtain a patent.

特許를 取得하도록 모든 努力을 하겠다.

EGYPT 이집트

〈파리協約(1951年 7月 1日) 加盟國, 特許: 種類로는 通常의 特許와 追加特許가 있다. 特許權의 存續期間은 出願日로부터 15年間, 다만 食品, 醫藥 등의 製法에 관한 特許權의 存續期間은 10年이다. 出願은 方式審査뿐이고 異議申請期間은 公告日로부터 2個月間. 商標: 權利存續期間은 出願日로부터 10年間으로서 10年마다 更新할 수 있다. 意匠: 權利存續期間은 出願日로부터 5年間이다.

EIRE 에리레共和國

파리協約 (1925年 12月 4日) 加盟國, 特許: 種類로는 普通特許外에 追加特許, 秘密特許가 있다. 特許權의 存續期間은 完全明細書(complete specification) 提出日로부터 16年間이며 期間中에 正當한 報酬를 받지 못했을 경우에 限하여 5年내지 最高 10年間의 延長이 認定된다. 特許出願은 方式, 新規性, 先願에 대하여 審査한다. 完全明細書가 受理되면 公告된다. 異議申請期間은 公告日로부터 3個月 以內, 非條約出願(Non-Convention Application)은 英國과 같이 假明細書(provisional specification)의 提出이 認定된다. 商標: 存續期間은 出願日 또는 優先日로부터 7年間, 以後 14年間마다 更新할 수 있다. 商標의 登錄은 英國과 같이 A部와 B部로 나누어 存續期間은 出願으로부터 5年間이며, 5年間씩 2回 更新할 수가 있다.

elaborate 圖 苦心하여 만들다, (文章을) 苦心하다

elaborate on a plan 計劃을 짜다

elaboration 圖 推稿

elaboration of the specification 明細書의 推稿

elapse 圖 (때가) 經過하다, 지나다.

The application will be laid open to public inspection after it has been elapsed eighteen

months from the filing date. 出願日로부터 18個月 經過하면 出願은 公開된다.

election 圖 選擇, 選舉

election of species 種概念의 選擇

〈美國의 特許法施行規則 第146條에는 다음과 같이 規定하고 있다.〉

In the first action on an application containing a generic claim and claims restricted separately to each of more than one species embraced there by, the examiner, if of the opinion after a complete search on the generic claims that no generic claim presented is allowable, shall require the applicant in his response to that action to elect that species of his invention to which his claims shall be restricted if no generic claim is finally held allowable. However, if such application contains claims directed to more than five species, the examiner may require restriction of the claims to not more than five species before taking any further action in the case.

1個의 類概念請求範圍와 그 請求範圍에 包含되는 것으로 서로 別個의 1 以上の 種概念으로 制約되는 複數의 請求範圍가 包含되는 1의 出願에 대하여 第1回日제의 指示을 發表할 경우에는 審査官은 그 類의 概念의 請求範圍를 完全히 調査한 다음 提示되어 있는 類概念의 請求範圍가 許可될 수 없다는 見解일 때에는 最終의 許可할 수 있는 類概念請求範圍가 없을 경우 그 出願의 請求範圍를 制約할 만한 그 發明의 類概念을 選擇하도록 指示의 回答書에서 出願人에게 要求한다. 그러나 前出願이 5 以上の 類概念이 包含되어 있을 경우에는 審査官은 2件에 關하여 別塗의 節次를 取하지 않고 請求範圍를 5個 未滿의 類概念으로 制約하도록 要求할 수가 있다.

美國特許廳 審査便覽은 以上の 規定에 대하여 審査官은 5未滿의 種概念을 請求하고 請求範圍를 制限하도록 命命할 수가 있으며 多數의 數를 包含하는 難件(aggravated case)에 適用하고 類概念에 손을 대지 말고, 問題點을 5個의 種概念으로 좁히게끔 할 수가 있다고 解說하고 있다.